



근로자 보건관리(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법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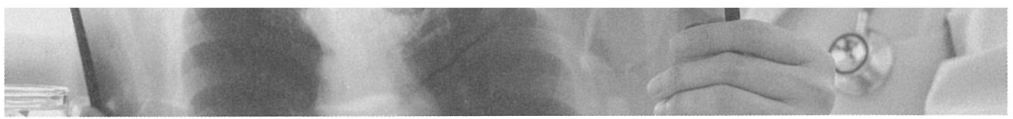
정진우

1. 역학조사

가. 취지

산안법 제43조의2의 역학조사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가 노출되는 화학물질 등 또는 근로자의 종사하는 작업과 근로자의 질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것이다.

역학조사란 일정한 집단에서의 특정 질병의 분포를 다각적(사람의 인자(성·연령·직업 등), 장소(지리적), 시간(연·월) 등)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왜 그와 같은 분포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주로 그 질병의 발병 원인)를 통계학적으로 해석하여 고찰하기 위한 조



사를 말한다.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코호트 연구(Cohort study),¹⁾ 환자군-대조군 연구(Case-Control Study)²⁾ 등의 연구방법이 있고, 역학조사와 유사한 조사는 특정 역병(疫病, 주로 특이한 것)에 이환한 자 등에 대해 그 직업 및 취급물질 등 및 그 병자의 병력,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조사하고, 그 직업 및 취급물질 등이 그 질병의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미 갖고 있는 과학적 식견에 비추어 고찰하기 위한 사례조사(Case Study)가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7조의3).

그리고 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제조공정, 작업력, 생사 구별, 사인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보고 등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법 제43조의2 제2항),³⁾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3조의2 제3항).

나. 역학조사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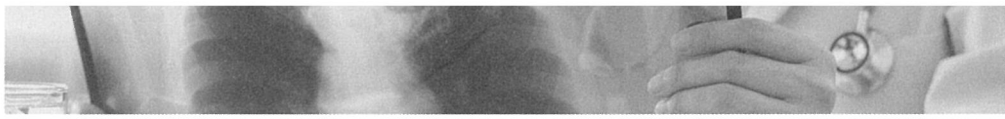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7조의2).

- ①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 ②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③ 공단이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④ 그 밖에 직업성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 역학조사의 절차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2항).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



표를 참석시켜야 한다(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3항).

라. 비밀유지

산안법 제63조에서는 역학조사의 실시업무에 종사한 자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 종사자가 개인의 사망원인 등의 프라이버시, 기업의 노하우에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⁴⁾

2. 건강관리 수첩제도

가.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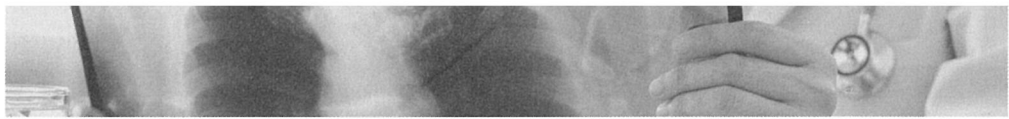
베타-나프틸아민, 벤지딘 등에 의한 암은 잠복기간이 20~30년으로 길고, 일단 발병하면 당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미친다. 따라서 이것들의 제조·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건강관리대책으로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관계업무에 종사한 자가 당해 업무를 떠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이직 후도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친 건강진단을 의무 지웠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업주가 영세한 경우가 많고 근로자가 퇴직한 사업장과의 접촉을 경원하는 등의 사정도 있어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중 장기간의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이직 후의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당해 업무에서 작업전환을 하여도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법 제44조 제1항 참조).

나. 발급 대상

건강관리수첩은 안전보건공단이 동 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는 건강장해 발생 우려 업무에 종사하고, 해당 업무 이직 시 또는 이직 후에 아래 표의 오른쪽 란에 제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청에 의하여 교부하고,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8조·제109조, 별표 14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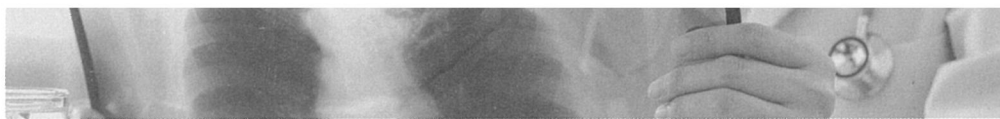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시행규칙 별표 14의2)〉

구분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 함유중량 1% 초과 제재 포함)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 함유중량 1% 초과 제재 포함)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 함유중량 1% 초과 제재 포함)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같은 물질 함유중량 3% 초과 물질만 해당) 제조 또는 취급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정성 음영이 있는 사람
4	비스-(클로로에틸) 에테르(같은 물질 함유중량 1% 초과 제재 포함)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 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을 1% 초과하여 함유한 제품에 한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 등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의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 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내지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월수) × 10 + (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월수)
6	다.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6	벤조트리클로리드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산화 반응 제조에 국한) 또는 취급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특정분진작업에 관계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진폐법 적용대상근로자 제외)
8	가. 염화비닐 중합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의 현탁액을 물에서 분리시키는 업무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크롬산·중크롬산과 그 염(같은 물질 함유중량 1% 초과 제재 포함) 제조(광석으로부터 제조하는 경우에 국한) 또는 취급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삼산화비스 제조공정에서 배소 또는 정제하거나 비소가 함유된 중량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니켈(니켈카르보닐을 포함)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업종에 한함)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4	제철용 코오크스 또는 제철용 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오크스 또는 가스 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오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국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에는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1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는 동 수첩의 발급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 110조의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 제20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2조 제2항).

라. 수첩의 용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2항).

한편, 건강관리수첩은 본래 교부받아야 하는 자 본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타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법 제44조 제3항).⁵⁾

3.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가. 취지

산안법 제45조의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규정은 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 정신장애 때문에 현재 자상타해(自傷他害)의 우려가 있는 자, 근로 때문에 질병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근로하게 하면, 본인 자신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병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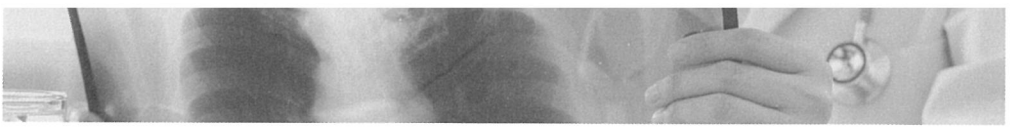
나. 근로를 금지해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의 종류 및 정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일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일정한 업무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다.⁶⁾

업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 ①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
- ②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에 걸린 사람
- ③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⁷⁾

일정한 업무의 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 시 건강악화 우려가 있는 질병과 고기



업 업무의 근로가 제한되는 질병으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

후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규칙 제117조 제2항).

- ①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애 또는 그 후유증
- ②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 ③ 빈혈증·심장관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 ④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 ⑤ 매니에르병·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 ⑥ 관절염·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 ⑦ 천식·비만증·바세도우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 등에 관련된 질병

다. 건강회복 시의 조치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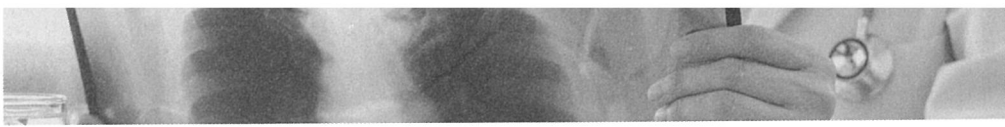
라. 근로금지·재개 시의 절차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4.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가. 취지

건강상 유해한 업무 중에는 그 작업의 양과 질에 따라 그 유해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시간 그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 종사근로자의 건강을 해하고, 직업성질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잠수업무, 고압 하에서의 업무 등에 의한 질병과 같이 물리적인 요인에 의한 직업성질환



중에는, 기기의 개량, 표준적인 작업방법의 확립 등의 대책과 아울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유해요인의 폭로를 줄여 직업성질병을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산안법 제46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직업성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에 반하여 근로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중 직접 당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시간 및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수반하여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 예컨대 잠수업무로 말하면 잠수작업자가 잠강(潛降)을 개시한 때부터 부상(浮上)을 개시할 때까지의 시간 및 잠수작업자의 체내의 가스압계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본 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의 특례를 두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⁸⁾

나. 근로시간의 제한

근로시간의 제한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는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이 정해져 있고(시행령 제32조의8 제1항), 잠함·잠수 작업시간, 기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보건규칙」 제376조 내지 제378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는 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6조).⁹⁾

다.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대상작업

사업주는 다음의 유해·위험작업에서 안전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¹⁰⁾

① 갱내에서 하는 작업

②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③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④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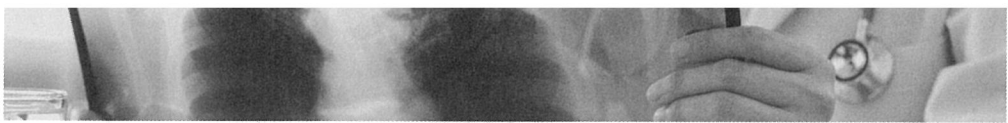
⑤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⑥ 강렬한 소음을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⑦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⑧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⑨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5.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가. 취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㉞를 해당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7조 제1항).¹²⁾

본 취업제한 규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소정의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해당 작업에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주, 지입차주(자영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자격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본 조항 위반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제한의 대상작업 및 자격·면허·경험·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취업제한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법 제47조 제3항).

나.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법 제47조 제2항),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취업제한규칙」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법 제47조 제3항). 

주석

1. 코호트 연구는 동종의 직업 또는 업무 등에 종사한 근로자 등의 가능한 한 폭넓은 집단을 역학조사의 대상집단(코호트)로 설정하고, 이 집단에 속하는 근로자 등의 사망원인 등의 소급조사 또는 장래에서의 사망원인 등의 추적조사를 하고, 그 집단에 속하는 근로자 등의 특정 사망원인 등에 관련된 사망률 등과 일반 인구에서의 그 사망원인에 관련된 수정사망률을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 등에 의하여,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자를 해명하고자 하는 역학적 연구방법이다.
2. 환조군-대조군 연구는 특정 지역 등에서의 특정 질병에 이환된 자(Case)와 성, 연령 등이 동일한 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당해 질병에 이환된 자(Case) 및 무작위로 선정된 자(Control)가 종사한 직업 또는 업무 등의 이력을 조사하여, 그 Case군(群)과 Control군(群) 간의 특정 직업 또는 업무 등의 출현빈도의 차를 통계학적으로 검토한 후, 그 특정 질병과 그 특정 직업 또는 업무 등의 관련을 해명하려고 하는 역학적 연구방법이다.
3.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 현재까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8. 현행 산안법 제46조가 이러한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볼진대, 현행 규정은 이러한 당초 취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먼저, 조문의 제목부 터가 근로시간의 '연장 제한'으로 조문의 내용과 맞지 않게 잘못 규정되어 있고, '작업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9.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이 규정은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11.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해당 자격 등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자(개인사업주, 지입차주)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12.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